

##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10 ~ 14 |
|----------|-----------|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연월일 | 2010. 4. 5. 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       |

### 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이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수입증지 및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,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의 종류와 기준 및 금액을 신설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안 별표 1의2 신설).

○ 주민등록등·초본 등 13종

나.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(안 제5조).

○ 일반 수수료의 경우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

○ 수입증지 요금제기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

다.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규정 미비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수수료의 환불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 단서 신설).

○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반환함

## 라.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정비함(안 별표 1).

- 행정안전부의 '사실확인서발급지침' 폐지 및 관계부처로의 사무 이관에 따른 신상에 관한 항목 정비
  - 부양가족사실확인 : 외교통상부 이관 ⇒ 존치
  - 독자사실확인 : 병무청 이관 ⇒ 존치
  - 호(제)적부 멸실확인(무적자사실확인) : 법원행정처 이관 ⇒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사실확인으로 명칭변경 존치
-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
  - (식품, 공중위생) 영업허가(휴·폐업) 사실증명 ⇒ 관리대장 사본교부
  -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⇒ 관리대장 사본교부
  - 철거사실 증명 ⇒ 건축물말소대장 사본교부
- 개별 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 삭제
  - 지방세납세증명 ⇒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무료 발급
  - 건설기계 저당(말소)등록 ⇒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에서 수수료 명시(대당 1천원)
  -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⇒ 「자동차 등록규칙」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
  - 조립실적확인
  - 하자보증금 납부(예치) 증명
  - 원천징수 공제증명
  - 보상금 지불증명 ⇒ 토지수용확인서로 대체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 및 제139조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조, 별표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
-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, 제38조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
-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- 「자동차 등록규칙」 제37조
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0. 1. 28. ~ 2010. 2. 19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등록규제 완화 1건(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)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조(요율)**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,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,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

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 수입증지 요금계기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요율)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,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요율)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,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,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(징수방법) ①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. 다만,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. | 제5조(징수방법)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,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      |
| 제6조(기납수수료의 불반환)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. <단서 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기납수수료의 불반환) -----<br>-----<br>----- . 다만,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
[별표 1]

## 제증명 등 수수료 (제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<br>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      | 금액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<b>1. 신상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(1) <u>이장재직사실확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       | 800              |    |
| (2) 재직(퇴직,경력)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       | 1,000            |    |
| (3) <u>부양가족사실확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통</u> | <u>1,000</u>     |    |
| (4) <u>독자사실확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통</u> | <u>1,000</u>     |    |
| (5) <u>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       | 1,000            |    |
| <b>2.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(1) <u>의료기관 약국(휴·폐업) 사실증명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       | 1,000            |    |
| <b>3. 부동산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(1) 개별공시지가 확인<br>※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필지       | 800<br>200       |    |
| (2) 개별주택 가격확인<br>※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주택       | 800<br>200       |    |
| (3) 공동주택 가격확인<br>※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주택       | 800<br>200       |    |
| (4)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<br>(가) 법 인<br>(나) 개 인                 | 1건<br>1건  | 30,000<br>20,000 |    |
| (5)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(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) 재교부<br>(가) 법 인<br>(나) 개 인 | 1건<br>1건  | 5,000<br>3,000   |    |
| (6) 분사무소 설치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       | 20,000           |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| 금액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<b>4. 지방세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1) 지방세 세목별 <u>과세증명</u>      | 1통 | 800     |    |
| <b>5.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</b>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1) 공유재산의 대부(신규) 신청          | 1건 | 5,000   |    |
| (2) 공유재산의 대부(연장) 신청          | 1건 | 3,000   |    |
| <b>6.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</b>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1) 공장등록 증명                  | 1건 | 1,000   |    |
| (2) 입지기준 확인신청                | 1건 | 31,000  |    |
| (3) 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            | 1건 | 20,000  |    |
| (4) 석유판매업(일반,용제대리점) 등록       | 1건 | 20,000  |    |
| (5)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          | 1건 | 20,000  |    |
| (6)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등) 신고         | 1건 | 20,000  |    |
| (7) 석유대체연료판매업(대리점,주유소,판매소)등록 | 1건 | 20,000  |    |
| (8) 대규모점포 개설등록(변경등록) 신청      | 1건 | 100,000 |    |
| (9)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             | 1건 | 51,000  |    |
| (10)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          | 1건 | 24,000  |    |
| (11)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      | 1건 | 24,000  |    |
| (12)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|   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| 금액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<b>7. 문화·관광 등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1)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가)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40,000              |    |
| (나)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20,000              |    |
| (다)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20,000              |    |
| (라)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0,000              |    |
| (2) 공연장 등록(변경등록)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0,000              |    |
| (3)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게임제공업(일반, 청소년),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,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, 노래연습장업 (허가, 등록, 신고)   | 1건 | 20,000              |    |
| (4)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게임제공업(일반, 청소년),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,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, 노래연습장업 변경(허가, 등록, 신고) | 1건 | 10,000              |    |
| (5) 체육시설업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30,000              |    |
| (6)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0,000              |    |
| (7) 영화상영관 등록(변경등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31,000              |    |
| <b>8. 환경 등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1) 소음·진동·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0,000              |    |
| (2) 소음·진동·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(신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            |    |
| <b>9. 건설 등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1)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            |    |
| (2) 소하천공사 시행(소하천점용, 사용)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/1,000 |    |
| (3) 소하천점 사용기간 연장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,300               |    |
| (4)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            |    |
| (5)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            |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| 금액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|
| <b>10. 도시·건축에 관한 사항</b>    |     |        |    |
| (1) 공(시)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       | 1통  | 800    |    |
| (2) 표준주택 설계도면              | 1호  | 1,500  |    |
| (3)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     | 1건  | 600    |    |
| (4)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          | 1건  | 1,000  |    |
| (5) 환지(예정지 지정) 증명          | 1필지 | 800    |    |
| (6) 환지예정지 분할               | 1필지 | 1,000  |    |
| (7)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     | 1필지 | 1,000  |    |
| (8)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           | 1필지 | 1,000  |    |
| (9) 체비지 분할 신청              | 1건  | 1,000  |    |
| (10) 토지대금 완납증명             | 1건  | 1,000  |    |
| (11)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          | 1건  | 1,000  |    |
| (12)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         | 1건  | 1,000  |    |
| (13) 토지사용(체비지) 승락          | 1건  | 1,000  |    |
| (14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       | 1필지 | 1,000  |    |
| ※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           | “   | 1,500  |    |
| <b>11. 농·수·축산 등에 관한 사항</b> |     |        |    |
| (1)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        | 1건  | 800    |    |
| (2)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신청        | 1건  | 10,000 |    |
| (3)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       | 1건  | 5,000  |    |
| (4) 유해어업 사용허가              | 1건  | 5,000  |    |
| (5) 비료생산업 등록               | 1건  | 30,000 |    |
| (6) 비료수입업 신고               | 1건  | 10,000 |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| 금액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<b>12. 보건·의료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1) 의료기관 관련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가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개설허가(부속의료기관 포함)            | 1건 | 100,000 |    |
| (나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(부속의료기관 포함)     | 1건 | 40,000  |    |
| (다)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안마시술소(안마원) 개설신고(부속의료기관 포함)        | 1건 | 40,000  |    |
| (라)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안마시술소(안마원)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(부속의료기관 포함) | 1건 | 20,000  |    |
| (마) 의료기관 개설허가(신고)필증 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|    |
| (2)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가) 치과기공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20,000  |    |
| (나) 치과기공소 양도·양수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0,000  |    |
| (3) 안경업소 관련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가)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8,000   |    |
| (나) 안경업소 양도·양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8,000   |    |
| (4) 위생관련 영업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가) 위생처리업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22,000  |    |
| (나)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2,000  |    |
| (다) 세척제제조업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29,000  |    |
| (라)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7,000  |    |
| (마) 기타위생용품제조업, 장난감제조업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4,000  |    |
| (바) 기타위생용품제조업,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|    |
| <b>13. 상·하수도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|
| (1)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4,000   |    |
| (2)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2,000   |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     |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3)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방서 교부<br>(가) 신 규<br>(나) 갱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<br>1건 | 4,000<br>2,000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4) 급수공사 설계<br>(가) 급수관구경 40mm 미만<br>(나) 급수관구경 40mm 이상<br>※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|          | 2,000<br>4,000<br>설계금액의<br>100분의1 |    |
| (5) 시공자재 검사<br>(가) 급수관구경 40mm 미만<br>(나)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,000<br>4,000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6) 준공검사<br>(가) 급수관구경 40mm 미만<br>(나)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,000<br>4,000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7) 수도계량기 시험<br>(가) 급수관구경 40mm 미만<br>(나)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1,000<br>2,000                    |    |
| (8) 정수처분 해제<br>(가) 급수관구경 40mm 미만<br>(나)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,000<br>4,000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b>14.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</b><br>(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)              | 1건     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[별표 1의2]

**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**  
(제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기 준    | 금 액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
| 1) 주민등록등·초본      | 1통     | 200   |     |
| 2) 가족관계증명서       | 1통     | 500   |     |
| 3) 제적등본          | 1통     | 500   |     |
| 4) 제적초본          | 1통     | 300   |     |
| 5)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   | 1통     | 500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연도 추가  | 100   |     |
| 6) 토지(임야)대장      | 1통     | 300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추가 1장당 | 100   |     |
| 7) 건축물대장         | 1통     | 300   |     |
| 8) 자동차등록원부(관내)   | 1통     | 200   |     |
| 9) 자동차등록원부(관외)   | 1통     | 1,000 |     |
| 10) 건설기계등록원부(관내) | 1통     | 300   |     |
| 11) 건설기계등록원부(관외) | 1통     | 1,000 |     |
| 12) 농지원부(관내)     | 1통     | 500   |     |
| 13) 지방세과세증명서     | 1통     | 500   |     |